

##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: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(미달러)[주식]

2. 변경 사유:

- 펀드의 기초통화 변경(2019.06.26)에 따른 신탁계약서 내 기준가 산정 방식 누락 내용 기재

3. 효력발생(예정)일: 2022년 07월 07일

4. 변경 주요 내용:

[신탁계약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6조 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)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적용하며,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. 다만, 법시행령제245조제3항및제4항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새로 설정하는 때의 이 투자신탁 원본의 가액은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총 좌수로 한다..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적용하며,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. 다만, 법시행령제245조제3항및제4항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새로 설정하는 때의 이 투자신탁 원본의 가액은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총 좌수로 한다. 단, 이 투자신탁은 2019년 6월 26일부터는 원본가액을 1좌당 1센트를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.
제30조 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 다만, 법시행령제245조제3항및제4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새로 설정되는 때에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기준일 전날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공고·게시한다..	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 다만, 법시행령제245조제3항및제4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새로 설정되는 때에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기준일 전날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공고·게시한다. 단, 이 투자신탁은 2019년 6월 26일부터는 1좌를 1센트로 하여 10달러로 공고한다.